

화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11.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2. 11. 30
다. 상정일자 : 2002. 11. 30

(제1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 : 환경과장 과 화열

나. 제정사유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수질개선톤별회계 설치

가. 세입(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규정)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출연
- 출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나. 세출(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규정)

-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항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이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604호로 제정되었으며, 7월 13일 대통령령 제 17677호로 동 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 제28조 제3항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를 토대로 금번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코자하는 조례안으로,

- 우리군에서도 금년 9월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부담금을 운용기위한 제정조례로서 물이용 부담금은 영산강법(영산강·섬진강수계물 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의 손실보상을 비롯하여 토지의 매수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금번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에 한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상 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동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결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효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 부 : 화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화순군수질개선톤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수질개선톤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영산강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출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산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영산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영산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항
4. 영산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영산강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6.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7. 영산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9. 그 밖의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의 각호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